

제7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6. 12. 26.(수) 14:0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성준 위 원 장
김재홍 부위원장
김석진 상임위원
이기주 상임위원
고삼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기에 대한 경례

③ 개회선언

④ 회의공개 여부 결정

-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

⑤ 의결사항

가. 2016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- OBS경인TV(주) (2016-73-344)

- 제70차 전체회의에서 'OBS경인TV(주)에 대해 청문을 개최하여 최다액출자자의 의지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의결'하기로 함에 따라 청문 결과를 반영하여 OBS경인TV(주)의 OBS경인DTV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
- OBS경인TV(주)의 OBS경인DTV방송국에 대하여 최다액출자자는 재허가 청문시

제출한 증자계획 및 경영위기시 자금지원, 인력운용계획 등 OBS 경영안정화를 위한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등의 조건 및 간접광고, 협찬 등 심의관련 규정에 대한 방송법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의기구, 심의절차 등을 점검하고 자율심의를 강화할 것 등의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허가를 하되, 허가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,

- 2013년 재허가 시 약속한 증자계획 중 미이행된 금액을 고려하여 책정한 “자본금 (30억원) 확충” 조건이 기한 내(2017.12.31.일까지)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, 신속하게 시정명령,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, 청문의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나. ㈜카카오의 알립톡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(2016-73-345)

- o 「전기통신사업법」을 위반한 카카오에 대하여 시정조치안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 - ㈜카카오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0조제1항제5호,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[별표 4] 5호 나목 2 및 나목 4를 위반하여
 - 동법 제52조(금지행위에 대한 조치) 제1항에 따라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등 시정조치를 명하고,
 - 동법 제53조(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)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[별표 6] 및 「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」에 따라 2억4천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다. ㈜카카오의 URL 수집·이용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(2016-73-346)

- o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카카오에 대하여 시정조치안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 - ㈜카카오가 카카오톡 대화창에 입력된 URL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수 있는 ‘다음 검색서비스’에 이용한다는 것을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[별표 4] 5호 나목 4를 위반하여

- 동법 제52조(금지행위에 대한 조치) 제1항에 따라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등 시정 조치를 명하고,
- 동법 제53조(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)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[별표 6] 및 「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」에 따라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라.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(2016-73-347)

-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(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)에 따라 제5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법인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,
 - 주식회사 쏘카, 아시아문화원, 주식회사 타바, 주식회사 하나씨티피 4개 법인에 대해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행, 위치정보보호법 관련법령 준수 등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하기로 하고,
 - 기술적 보호조치 등이 미흡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은 주식회사 제이케이데이터시스템즈에 대해 허가를 거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

㉞ 보고사항

가. 2016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

-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라 실시한 2016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배중섭 방송기반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 - '15년 방송시장 개관, SO, 위성방송, IPTV 등 유료방송시장, 방송채널 거래시장,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, 방송광고시장 등의 평가결과를 원안대로 접수함

㉟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회의는 1월 5일(목) 9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

6. 폐 회 (11:47)